

4-2-6 겸임교원 임용 규정

<전부개정 2019.7.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수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교원인사규정 제2조 제6항에 따라 겸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 겸임교원은 겸임교수, 겸임부교수, 겸임조교수로 구분한다.

제3조(자격) 겸임교원은 순수 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실험·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서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우리대학교에서 담당하게 될 교수 및 연구내용이 원 소속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한 자
3. 원 소속기관에서 정규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현직 재직자로서 근무경력(원 소속기관에 소속되기 전에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이 3년 이상인 자. 다만, 전일 근무 형태의 겸임교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원 소속기관에서 휴직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제4조(겸임교원의 정원 및 겸임교원 산정기준) ① 겸임교원을 둘 수 있는 정원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우리대학의 교원 법정정원의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둘 수 있다.<개정 2024.1.8.>

② 겸임교원의 수는 각각 계열별로 겸임교원이 담당하는 주당 교수시간을 합산한 시간수를 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제5조(임무 및 권리) ① 겸임교원은 다음 각 호 1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실무·실험·실기 강의 및 지도
2. 전임교원과의 공동연구
3. 기타 교육 및 연구 활동 지원

② 겸임교원은 주당 9시간 이내로 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③ 겸임교원은 우리 대학교의 각종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신규임용절차 및 심사내용) ① 겸임교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부장 및 대학원장의 추천 또는 교무처장, 산

학협력단장 등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특별채용 할 수 있다.

② 겸임교원의 공개채용 절차는 강사의 임용 절차를 준용한다.

③ 겸임교원의 공개채용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겸임교원 지원자 제출서류 목록 1부
2. 겸임교원 임용지원서 1부(별지1호)
3.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4. 소속기관장 겸임동의서 1부(별지2호)
5. 학위증명서(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1부
6. 세례증명서 또는 출석교회 담임목사 추천서
7. 개인정보 수집·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1부(별지3호)
8.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부(별지4호)
9. 교과운영계획서 1부
10.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겸임교원 공개채용 심사내용은 별지 5호, 6호, 6-1호, 7호, 8호에 따른다.

⑤ 겸임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전부개정 2024.1.8.]

제7조(임용계약) <삭제 2024.1.8.>

제8조(임용기간) 겸임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징계·연구년(6개월 이하)또는 교원의 직위해제·퇴직·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겸임교원이 필요한 경우
2. 학교외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1년 미만의 연구 또는 산학협력에의 참여를 위하여 겸임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3.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는 제외한다)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를 겸임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제9조(임용제한) 겸임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2항 제2호의 나목, 「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리대학 겸임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0조(재임용절차) ① 겸임교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② 겸임교원의 재임용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강사임용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제11조(면직) 겸임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때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면직한다.

1. 소속 기관의 직을 상실하였을 때
2. 겸임교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3. 강의를 담당하지 아니하게 될 때
4. 임용기간 중 만 65세에 달하는 자(이 경우 만 65세에 달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 만료일로 한다.)
5. 우리대학교의 명예 또는 교수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제12조(임용계약) ① 겸임교원의 임용계약은 매년 학기 개시일 이전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당사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체결한다. 단,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용일자를 달리 할 수 있다.

② 임용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임용기간, 급여, 강의시간 및 복무, 면직사유 및 기타 세부사항을 명시한다.

제13조(처우) ① 겸임교원의 급여는 강의시수에 따라 책임시간 및 강의료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한다.

② 겸임교원에게는 상여금, 정근수당, 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겸임전임강사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 당시 재직 중인 겸임전임강사는 개정 규정의 제2조에 따른 겸임조교수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1호 서식]

겸임교원 임용 지원서

접수번호	
------	--

[별지 제 2호 서식]

겸임동의서

겸임대상자 원 소 속	소 속		직위 및 담당업무	
	성 명		생년월일	
겸 임 부 서	예수대학교 학부			
소속기관주소			전화번호	
고등교육법 제17조에 의거 상기인을 위와 같이 예수대학교 겸임교원으로 임용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직인) 예수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 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24조에 의거하여 예수대학교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 주체의 동의하에 수집·보유·제공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 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에 의거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고자 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겸임교원 임용과 관련하여 이용 및 제공할 것이며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처리목적 달성시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해당 법령 준수를 위한 불가피한 사항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목적

- 겸임교원초빙 심사에 필요한 모든 개인정보의 수집
- 겸임교원초빙관련 채용심사 및 지원자 사후관리에 이용 및 제공
- 기타 개인의 이익을 위한 정보제공 (법률근거, 경력 및 학력조회 등을 위한 기관제공)

2.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 개인민감정보 : 종교(세례유무)
- 개인속성정보 : 생년월일, 전화번호.(집, 직장, 핸드폰), 주소, 이메일, 출신학교, 학위, 성적, 경력사항, 자격·면허, 연구실적 등

3.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채용절차를 계속하는 동안 보유·이용 하며, 업무완료 후 파기
(단, 채용된 인원에 한해 영구보존)
-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서는 개인 책임입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생년월일 : 년 월 일

작 성 자 : (인)

예수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 4호 서식]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3.21.>

(앞쪽)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예수대학교 취업예정자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전주완산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5호 서식]<신설 2024.1.8.>

겸임교원 공개채용 서류 심사표

1. 지원자 인적사항

학부	담당과목	지원자 성명	생년월일

※ 임용예정일 현재, 만 65세 이상자는 본교 겸임교원에 임용될 수 없음

2. 제출서류

서 류 명	제출여부		서 류 명	제출여부	
	○	×		○	×
1. 제출서류 목록			7. 담당과목 교과운영계획서		
2. 겸임교원임용지원서			8. 세례증명서 또는 출석교회 담임목사 추천서		
3. 소속기관장 겸임동의서			9. 개인정보수집·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4. 학위증명서(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10.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5. 경력 및 재직증명서			11. E-mail 파일제출 유무		
6. 학력 및 경력조회 동의서					

3. 자격심사 및 적격여부 심사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정한 조교수 자격
기준 충족 여부 심사)

채용분야 적격여부	심사결과	
	적격	부적격

*단, 간호학의 경우, 석사이상이며 임상경력 3년 이상이 충족되어야 함.

자격기준							심사결과	
							적격	부적격
법정	연구·교육 경력연수	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전문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연구실적 연수	교육경력 연수	계	연구실적 연수	교육경력 연수		
	직명							
	조교수	2	2	4	3	4		
※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 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 으로 본다.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	-----	-----	------

[별지 제6호 서식]<신설 2024.1.8.>

겸임교원 기초 및 전공심사표

1. 지원자 인적사항

학부	담당과목	지원자 성명	생년월일

2. 기초 및 전공심사 평가

평가 항목	심사기준	배 점	위양평점
전공영역의 적합성	매우적합 : 5점 적 합 : 3점 보 통 : 1점	5점	
학력 (학위)	박사학위 소지자 : 5점 석사학위 소지자 : 3점	5점	
담당예정교과목과 산업 체 직무의 연관성	매우적합 : 20점 적 합 : 14점 보 통 : 10점	20점	
전공분야 실무경력	10년 이상 : 20점 5년 이상 : 15점 5년 미만 : 10점	20점	
교과운영계획의 적절성	우수 : 16~20점 보통 : 11~15점 미흡 : 10점 이하	20점	
합 계		70점	

20 . . .

심사위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	-----	-----	------

[별지 제6-1호 서식]<신설 2024.1.8.>

겸임교원 기초 및 전공심사표

(교과운영계획의 적절성)

1. 지원자 인적사항

학부	담당과목	지원자 성명	생년월일

2. 심사기준 및 점수

심사기준		평가점수	평가의견
우수	16 - 20점		
보통	11 - 15점		
미흡	10점 이하		
평가점수			

※ 평가 실 점수 기재 및 평가의견 간략하게 기술

20 . . .

심사위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	-----	-----	------

[별지 제7호 서식]<신설 2024.1.8.>

겸임교원 임용 면접 심사표

1. 지원자 인적사항

학부	담당과목	지원자 성명	생년월일

평가내용	평 점			평가점수	평가의견
	A (30)	B (20)	C (10)		
교육자적 자질 (열정 및 발전가능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총점 평균					

20 . . .

심사위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	-----	-----	------

[별지 제8호 서식]<신설 2024.1.8.>

겸임교원 임용 최종 심사 결과 보고서

지원자 성명	심사평정결과			최종 임용후보자 선정 점수 (100점 만점)	득점 순위
	서류심사 (적격·부적격)	기초 및 전공심사 (70점 만점)	면접심사 (30점 만점)		

* 최종심사결과 종합점수 70점 미만인 자는 심사에서 탈락한다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 . . .

심사위원장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	-----	-----	------

[별지 제 9호 서식]

겸임교원 임용 계약서

예수대학교 겸임교원으로 임용함에 있어 예수대학교 총장을 “갑”, 을 “을” 이라 하고, 양 당사자의 합의 아래 다음과 같이 임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이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과 같다.

- ☐ “갑” 예수대학교 총장
☐ “을”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제2조(계약내용)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이 겸임교수 임용에 따른 계약을 체결 한다.

1. 소속기관 및 임용직급 : “갑”은 “을”을 예수대학교 학부
겸임조교수로
임용한다.
2.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1년)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재임용 심의 결과에 따라 재계약 할 수 있다.
3. 학기별 주당 담당과목 및 시간

구분	담당과목(담당시간)		비 고
	1학기	2학기	
실 무			현장실습
실 험			기초과학
실기강의 및 지도			교내실습
합계			

* 담당과목 및 폐강으로 인한 시간이 변동된 경우 계약을 변경 할 수 있다.

제3조(임금) “갑”은 예수대학교 「책임시수 및 강의료 지급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하여 “을”에게 임금을 지급한다.

1. 항 목
2. 계산방법
3. 지급방법

제4조(직무)

1. “을”은 학기별로 주당 9시간 이하의 강의를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총장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 12시간 까지 강의 할 수 있다.
2. “을”은 성실하게 학생을 교육·지도하며, 본 대학 제 규정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면직) “을”은 예수대학교 「겸임교원임용규정」 제11조에 따라 면직 사유 발생 시 면직 된다.

제6조(계약 해지 및 변경) “을”이 예수대학교 「겸임교원임용규정」에서 정한 임용 취소 및 면직사유에 해당될 경우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 할 수 있다.

제7조(재임용 심의 및 재계약)

1. “을”의 재임용 심의는 예수대학교 「강사임용 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2. 재임용 심사를 통과한 자에게는 “갑”은 “을”과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수대학교 「겸임교원임용규정」에 따른다.

년 월 일

“갑” : 예 수 대 학 교 총 장

“을” : _____(인)

상기 계약 내용을 고지 받고 동의함. _____(인)